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4. / (총 14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1721
고용노동부	과 장	최 영 범		044-202-7307
인적자원개발과	담 당 자	진 혜 숙		044-202-7323
식 품의 약품 안전 처	과 장	최 종 동		043-719-2051
식 품 안전 관리 과	담 당 자	심 연		043-719-2054
교육부	과 장	신 진 용		044-203-6729
교수학습평가과	담 당 자	최 원 휘		044-203-647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계획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이하로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시행되어온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시설분류나 영업 제한 시설 지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나 풍선효과 등 방역 조치과정에서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방역 당국에게 점검·보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관내 시설에 대해 세심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한편,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유연·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관별 여건이나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현실에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프라 부족이나 조직문화 등에서 비롯되는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 감염 차단,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시장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 또한, 대형 전통시장 100개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0개소에 방역 소독기, 소독약품, 소독 장갑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자치구 환경미화원에게도 마스크, 방호복 세트,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워한다.
 - 경기도는 어제(9.3.목) 문자 및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대상자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한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및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20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 한편, 주말을 맞아 9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 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874개소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청(미추홀타워) 내 외주업체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 폐쇄 및 방역 조치, 상주직원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업장 대응지침', '유형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전화상담실(콜센터)·육가공업 등과 같이 밀집·밀폐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
 - * 콜센터, 육가공업, 물류센터, IT업종, 전자제품조립업, 제조업, 가전제품 방문 수리업 등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 4011명과 의심환자 6만 6422명 등 총 8만 2662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2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
 -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 (8.27.) 313명 (8.30.) 203명 (9.2.) 187명 (9.4.) 128명
 -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 □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

- 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 ②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④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 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 *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조치 중
-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 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

-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워격수업만 허용한다.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 이 시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접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타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시우나, 멀티 방DM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 행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타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다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다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상), 뷔페, PC방 O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 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M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O 해당사항 없음 O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기관, 기입 민간 이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인원 제한 권고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자정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자정까지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8월 26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 *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7.31.발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丁正	1단계	2단계	3단계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유치원,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전국단위 조정(원칙),		
초·중·고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금)에서 9월 20일(일)까지로 연장한다.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계획>

구 분	조치 내용	2단계 기한	학사 조치 기한
전국(비수도권)	밀집도 최소화 조치(1/3, 고2/3)	~9.20	~9.20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고1/3)	~9.13	~9.20

○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1/3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3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64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5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06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73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3.)는 불시점검,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5명을 적발하여, 이 중 4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 □ 9월 3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만 3892개소, ▲실내체육시설 4,114개소 등 37개 분야 총 7만 7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3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홍시설 56,44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85반, 1,656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국민행동지침
 -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모누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